

어르신 빈곤과 일자리 개선방안

양 철 호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가동하면서 복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망의 가동과 동시에 노인자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은 빈곤이다. 어르신들이 생의 후반기에 겪고 있는 빈곤이나 건강, 외로움 문제, 또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한 어르신 자살 현상 등을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적인 해결 방안으로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빈곤 극복과 같은 어르신들의 요구에 충족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어르신 빈곤, 노인 일자리 문제의 현황을 점검한 후 그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제시된 핵심은 우선 국가가 책임을 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것인데, 지금의 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이어야 한다. 즉 본고에서는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청년세대를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였다.

[Key words: 노인일자리, 빈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외로움, 일자리사업단]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20-714 전라남도 나주시 건재로 185번지 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양철호 교수 앞으로 하시길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drchyang@daum.net이다.

서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이하 ‘사통망’으로 약칭)이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복지사업과 수혜자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09년 준비 작업을 거쳐서 2010년 초부터 가동 중에 있다. 그동안 사업별로 분산 운영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정기적으로 넘겨받아 복지 수혜자의 자격 요건 등을 전산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통망의 운영은 부정수급이나 횡령사고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통망의 가동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어르신¹⁾들의 자살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빈곤에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자로 취급을 받게 된 어르신들 중 일부는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할 능력이 없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이었다. 어르신들의 자살은 자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빈곤 문제이다 (구인회, 2011).

빈곤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사회문제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들 가운데서 비슷한 수준의 비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

1) ‘어르신’이라는 용어는 1999년 ‘세계노인의 해’를 앞두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노인’을 대신할 용어로 공모한 당선작이다. 민간 주도의 운동이었던 까닭에 널리 쓰이지 못했으나, 2012년 9월 서울시에서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공경,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날 수 있는 대체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노인 대체 명칭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어르신’을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르신’을 서울시 공문서 및 행정용어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명칭도 ‘어르신복지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필자도 이 취지에 공감하여 본고에서 법령 등의 공식명칭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어르신 빈곤과 일자리 개선방안

노령연금제도 그리고 국민연금제도 등을 통하여 가난한 어르신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난한 어르신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 건강 그리고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떠오른 노인일자리도 어르신들의 빈곤 극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어르신 빈곤, 노인일자리 문제의 현황을 점검한 후 그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인구 고령화와 빈곤 문제

인구 고령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어르신 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그리고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계청, 2011a).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0년 울산광역시 어르신 인구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 사회 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는데, 전라남도의 경우 어르신 인구비율이 20.4%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역시 통계청의 보도자료(2011. 12. 7.)에 의하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전체인구의 2.9%인 73만 명이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전체인구의 11%인 545만 명이었으며, 2030년에는 1,269만 명(전체인구의 24.3%) 그리고 2060년에는 1,762만 명(전체인구의 40.1%)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 인구의 규모는 진입하는 코호트의 규모와 기대수명의 향상 속도에 따라 변화하겠지만, 적어도 2020년까지는 연평균 4%대로 성장하고,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2028년 사이에는 연평균 5%대로 급증한 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 2011b).

어르신 빈곤

전체 어르신 인구 중 소득이 중간계층 소득의 절반 이하인 어르신 인구비율을 어르신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르신 빈곤율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다. OECD가 2011년 3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어르신 빈곤율은 13.5%(남성 11.1%, 여성 15.2%)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5.1%(남성 41.8%, 여성 47.2%)나 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비율이 낮은 나라는 1.5%인 뉴질랜드이며,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나라는 30.6%의 아일랜드 그리고 28.0%의 멕시코이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빈곤율을 보아도 우리나라의 어르신 빈곤율은 매우 높다. 즉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이 10.6%이며, 한국의 빈곤율은 14.6%이었다 (OECD, 2011).

우리나라 어르신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²⁾ 이하에 해당되는 어르신의 비율은 2006년 30%, 2007년 31%, 2008년 32.5%, 2009년 35.1%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석상훈, 2010). 더군다나 65세 이상인 고령가구 중 어르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34.2%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의 76.6%가 빈곤층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30.7%)와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OECD, 2011).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의 빈곤 실태의 문제점은 빈곤율이나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 비율 등의 절대적인 수치도 낮은 편이지만,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하여 상대적인 빈곤도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세후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³⁾는 0.409로 멕시코(0.524)와 칠레(0.474)에 이어 OECD회원

2)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는 보건가족복지부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해야 한다. 2012년 9월 1일 공표된 최저생계비는 월평균 1인 가족 553,354원, 2인 가족 942,197원, 3인 가족 1,218,873원, 4인 가족 1,495,550원 등으로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76,677원이 증가한다.

어르신 빈곤과 일자리 개선방안

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세후 지니계수의 평균은 0.299이며,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이 0.314 그리고 한국이 0.315임을 감안할 때 전체 인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어르신들의 소득 격차가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석상훈, 2012).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어르신의 빈곤 위험도 역시 높은 편인데, 2000년대 중반 66-74세 노인인구의 빈곤 위험은 전체 인구의 위험에 비해 3배 더 높고,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3.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의 66-74세 인구의 빈곤 위험은 국가 평균과 동일하거나 더 낮고,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1.5배 정도이다 (석상훈,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르신의 41.4%가 어르신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통계청, 2011a).

어르신 빈곤과 자살

어르신 빈곤율과 더불어 어르신과 관련된 지표들 중에서 최악인 것은 어르신 자살율이다.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자살율은 OECD 회원국들 중 1위에 해당된다 (김유진, 2011). 65-74세 어르신들의 자살율은 10만 명당 81.8%로 일본의 17.9명, 미국의 14.1명, 그리스 3.4명보다 현격하게 높으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율은 10만 명당 160.4명으로 그리스보다 40배 이상(4.4명)이 높은 편이다.

통계청(2011c)의 ‘2010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모두 15,566명으로 전년도보다 1.0% 증가했는데, 특히 남성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다. 남성 자살률이 증가한 기본적인 이유는 어르신들의 자살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70대 남성자살률은 10만

- 3)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0을 초과하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해석한다. 세금을 걷고 난 후에 계산한 지니계수를 세후 지니계수, 걷기 전의 지니계수를 세전 지니계수라고 한다.

양철호

명당 134.8명으로 전년대비 8.8%, 80세 이상 자살률은 22.7명으로 전년대비 4.1% 각각 증가하였다. 이렇듯 어르신자살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자살은 다른 연령층의 자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덜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인회(2011)는 우리사회에는 자살은 우울증 등 당사자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퍼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또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어르신자살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이소정 등(2009)은 어르신자살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언급한 다양한 논문들을 검토한 후 어르신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을 경제적인 문제라고 지목했다. 또 그들은 경제적 문제라는 거시적 지표(예; 소득 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경제적 취약성)가 자살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행위요인에 연결된다는 점, 즉 경제적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야기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논문들을 근거로 사회경제적 요인(예; 국가경제수준과 어르신 빈곤율 등)은 미시적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으로서 자살률과 밀접하게 관계된다고 추론하였다 (이소정 등, 2009).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 등이 절망과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모형을 검증한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빈곤은 절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절망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르신의 자살에 개입할 때, 절망과 우울 뿐 아니라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신학진, 2012).

어르신 빈곤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과거에는 빈곤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고, 빈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위기, 재해, 전쟁 등과 같이 개인

어르신 빈곤과 일자리 개선방안

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점차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빈민을 보호했던 ‘생활보호법’을 폐기하는 대신에 1999년 법률6024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2조(정의) 1항에 “수급권자”라고 명시하여 가난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최저생활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주체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동조 2항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여 어르신에 대한 자식들의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서는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했고, 2항에서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고 하여 어려운 사람은 하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6조(비용의 징수)에서는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7가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도에 145만 8,000명으로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26.8%인 39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7.3%로 전체인구의 2.6%가 수급자인 것을 감안하면 어르신들의 이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5월부터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롯한 218종

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사통망’을 개통하여 전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33,000명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140,000여 명의 급여를 삭감하였다. 이는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7만여 명의 11%에 이르는 규모다. 수급자격을 잃은 24,000여 가구 중 45%(10,700여 가구)가 어르신가구였으며, 그 중 2명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한겨레신문, 2011). 수급자에서 탈락한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일은 2012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2012).

노인복지법에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하인 어르신에 대해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요건은 노인복지법시행령에 정하고 지급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 그 동안 비판을 받아 왔던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제도를 폐지하고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르신 1인 가구인 경우 최대 월 9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최대 월 140,000원 가량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일자리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공적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8.4%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OECD 30개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인 21.4%의 2.7배에 해당한다 (석상훈, 2012). 이와 같이 어르신들의 소득구조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그리고 외로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일일 것이다.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은 10여 년 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시군구에 108개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주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 현재 전국에서 240,000여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

어르신 빈곤과 일자리 개선방안

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어르신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여 월 2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연 7개월 이상씩 일을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시장진입형에서 21,952명이 그리고 사회공헌형에서 217,648명이 일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2).

구체적인 유형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공익형은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과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등 12가지 사업으로 사회공헌형 사업에 참여하는 어

<표 1>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유형비용
			인건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	계	
사회 공헌 형	공익		20만원	7개월	13만원 (예산범위내 공익형11-13 만, 교육· 복지형13-15 만원 탄력 적용가능)	151-155 만원	복지형사업취 소 20%이상 추진 -나머지유형은 시·도 자 율적 판단에 의해 실시
	교육						
	복지						
시장 진입 형	인력과견형		-	연중	15만원 (예산범위내 탄력 적용가능)	10-15만 원	각시·도별 사업량 할당
	시장 형	공동 작업형	-	연중	130만원	130만원	각시·도별 사업량 할당
		제조 판매형	-	연중	150만원	150만원	각시·도별 사업량 할당
수행기관 전담인력			100만 원	9개월	-	900만원	-

주. 모든 유형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는 50%임 (단, 서울시의 경우는 30%임)

출처: 2012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2012)

르신들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일자리이다. 교육형은 전문성을 갖춘 어르신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는 일자리로 숲생태해설사업과 통번역사업 등 11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형은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로서 독거어르신 돌봄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10가지가 있다. 인력과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수요처로 파견하는 것을 말하며 경비원, 주유원 등 다양하다. 시장형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소규모 창업 및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주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르신이 일자리 사업단의 주체라기보다는 적은 일을 하고 적은 품삯을 받는 소극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어르신일자리는 은퇴 후 새로운 기술 습득 등을 통하여 재취업하거나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 권순우 등, 2011)나 시간제 등을 활용한 정년연장 또는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르신 빈곤과 일자리 개선방안

전장에서 논한 어르신빈곤 대책과 어르신일자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르신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사통망을 통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고 조사된 어르신들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일체의 부양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러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어르신들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2항의 ‘수급권자에

어르신 빈곤과 일자리 개선방안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중략) 수급권자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유무를 떠나 현재 가난한 어르신은 수급자에서 탈락시킬 수 없는 것이다.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비용의 징수를 적용하면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 부양을 안 할 경우 어르신에게는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 부양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한다면 막다른 길에 몰린 가난한 어르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주도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하는 어르신들을 선발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일자리보다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의 수가 많다 보니 경쟁을 통하여 일할 어르신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가난한 순서대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매년 초에 어르신들은 자기가 다른 어르신보다 얼마나 더 가난한지를 증명해야만 한다. 물론 가난한 순서대로 선발하는 것이 어쨌든 객관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가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상기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예산을 '기초노령연금'에 보태어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경제 우선이 아닌 일할 의지와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어르신일자리 사업단을 공동체,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셋째, 보건복지부 주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임금은 8년째 20만원이다. 8년 동안 모든 것이 올랐는데 노인일자리 임금만 제자리인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든 납득이 될 수 없다. 또한 1년에 7개월만 일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넷째,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인터넷을 통한 홍보나 거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청년들은 전문성과 연륜이 풍부한 어르신들과 같이 일함으로써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단이 활성화되면 어르신일자리에 관한 경험이 우리보다 풍부한 일본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하기는 하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고도의 노동력이 요구되지 않는 즉,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여 어르신일자리 사업단과 계약을 맺어 지속적인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몇 년 후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의 어르신들이 가난, 질병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고 품위를 지키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며 이는 단지 어르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유진 (2011). 노년기 자살을 극복하게 하는 보호요인. 서울시어르신 상담센터 주관 노인자살예방 세미나 발표 (2011. 11. 10.)
- 권순우 · 신창목 외 (2011). *SERI 전망 2012*.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구인회 (2011). 세상읽기: 노인자살. *한겨레신문* (2011. 5. 8.).
- 보건복지부 (2012). *2012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 석상훈 (2010).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연금포럼*, 38, 48-57.
- 석상훈 (2012). *고령자의 취업실태와 정책방향*. 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2. 9. 7.).
- 신학진 (2012). 노년의 4대 고통이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 모형. *노인복지연구*, 57, 357-380.
- 오마이뉴스 (2012).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70대 자살은 사회적 타살*. (2012. 08. 08.)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5622]
- 이소정 · 정경희 · 강은정 · 강상경 · 이수형 · 김영아 (2009).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34-4).
- 통계청 (2011a). *2011 고령자 통계*.
- 통계청 (2011b).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2011. 12. 7. 보도자료)

어르신 빈곤과 일자리 개선방안

통계청 (2011c). *2010년 사망원인 통계*.

한겨레신문 (2012). *수 십 년째 연락안한 가족이 부양능력 있다고...기*

초수급자 17만 여명 결국 '급여 삭감·탈락.' (2011. 8. 17. 12면)

OECD (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2011. 3.)

(논문접수일: 2012년 10월 12일)

(수정논문접수일: 2012년 11월 20일)

(논문게재승인일: 2011년 11월 28일)